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6)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및 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6. 10.)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98 호
----------	---------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p>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p>〈신 설〉</p>	<p>[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5%;">위 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근 거 법조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td> <td style="font-size: small;">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td> <td></td> <td style="font-size: small;">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td> <td></td> <td style="font-size: small;">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td> </tr> </tbody> </table>	위 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위 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